

일본의 석유 관세 제도 현황

- 2006년 4월부터 원유관세 폐지 -

西村 功(니시무라 이사오) | 前 일본코스모종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2002년 4월 1일자로 일본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가 개정되었다. 세계개정의 골자가 되는 자민당의 2000년도 세계개정대강은 1999년 12월 19일에 결정되었지만, 원유관세에 관한 개정 이유는 post제8차 석탄정책의 원활한 종료라는 정책적 요청에 의한 것인데, 원유관세는 현행세율 215엔/kl을 2002년도 이후 170엔/kl로 낮추고, 적용기한을 4년간 연장하여, 200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무세로 하는 것으로 제품관세율도 2002년도 이후, 원유관세율 인하 추이를 보면서 인하하기로 했다.

2. 경과

일본에서는 수입원유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용도는 석탄대체용이다. 이러한 징세는 일본의 독특한 세제로 여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왜 수입원유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일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일본은 새로운 산업입국국으로서 출발했다. 당시는 국내산 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구조였지만, 그 후 경제가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석유 수입도 시작되어 결국,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다. 소위 「主油從炭」시대의 도래이다. 그래서, 정부는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유소비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55년 8월부터 정제용 원유에 대해 2%, B-C유에 대해서는 6.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중소 탄광은 물론, 대규모 기업도 폐광, 철수가 이어져, 1960년 4월 임시·잠정적조치로 수입원유에 관세를 부과해, 그 세수를 국내석탄산업의 지원자금으로 쓰게 되었다. 그 후, 석탄산업은 대표적 사양산업의 하나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1985년 9월부터 시작된 제8차 석탄정책 등에서 철수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최후까지 남아 있던 태평양탄광(훗카이도)도 2002년 1월 30일에 폐광하여 국내의 상업생산탄광은 모두 소멸되었다.

국내석탄산업이 소멸된 현재,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는 원래 상태인 무세로 돌아가야 하고, 또한 석유업계도 계속적으로 철폐를 요청해 온 사실도 있어, 관세율심의회에서도 이미 철폐 의견으로 결정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post제8차 석탄대책(소위 사후 처리대책)의 원활한 종료라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내걸고, 계속해서 2006년 3월 31일까지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달리 대체재원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3. 현행세율개요

지금까지 원유관세율의 개정은 다른 세율개정과 같이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의한 「세계개정대강」에 의해 매듭지어지고, 각의결정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1992년도도 세계개정은 같은 해 1월 10일의 각의에서 「1992년도 세계개정 요강」이 결정되었다. 이 속에서 석유와 관련해 원유관세에 대해 그 기본세율을 무세로 하고, 1992년도부터 5년마다 2단계의 잠정 세율이 설정되어 세율을 단계적으로 10년간에 걸쳐 무세로 하는 일정이 정해졌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실시되는 한편, 1991년 6월 석탄광업심의회 답신에서 향후 석탄광업대책에 관해 「90년대를 구조조정의 최종단계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또한, 「관계법령에 관해 본 답신의 취지에 따라 개정 등을 실시한 후에 그 문제들에 대해 10년간의 연장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석탄대책은 향후 10년간의 연장을 거쳐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한 방향에 따라, 석탄대책제원인 원유관세에 관해서도 1991년 12월 19일의 관세율협의회의 답신에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한 후, 재정사정 전망에 따라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간 잠정세율을 2단계로 인하하고, 11년째에 무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1992년 3월말의 법률개정(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동 조치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1992년 4월 1일~1997년 3월 31일 315엔/kl

1997년 4월 1일~2002년 3월 31일 215엔/kl

그러나, 모두에 언급했듯이, 2000년에 실시된(2003년 이후 세계개정문제를 검토한다) 세계조사회에서 post제8차 석탄대책에 관련한 예산문제가 심의되었는데, 당초 무세가 확정되었던 세율이, 2002년 4월 이후 4년간에 걸쳐 계속 부과되기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4월 1일 이후, 원유관세는 영세율로 결정되었다.

2002년 4월 1일~2006년 3월 31일 170엔/kl

계속 부과하는 이유인 「post제8차석탄대책의 원활한 종료」란,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석탄대책비로서 발생하고 있던 「차입금원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상황, 즉 빛의 변제이다. 2002년도의 石特會計 예산의 석탄 부문에서는 「차입금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84억엔이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라고 설명부기되어 있다. 그 밖의 석탄대책비로서 16억엔이 배정되어 2002년도의 석탄대책예산은 총 100억엔이다. 이에 대해, 신세율에 의한 2002년도 원유·석유제품 관세수입예산은 400억엔으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출의 外數로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본 및 이자의 상환에 대비하여 잉여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어쨌든간에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원유관세 단가 170엔/kl은 상환해야 할 금액, 석탄대책비, 잉여금적립의 합계와 예상되는 수입 원유수량과의 관계를 감안해 설정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인데, 일본 정부 설명으로는 원유관세율 인하 정도에 따라 인하를 결정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국내석유산업의 보호라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세금 인상 쪽으로의 설정도 생각되는데, 원유관세 인하에 따라 인하효과로 생기는 금액의 상당분을 수입석유제품의 기존 적용관세로부터 빼는 방식(원유관세인하분을 소비자에게 merit환원)을 취하고 있다. 상세한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지만, 어쨌든 개정시점에서 제품의 국내외가격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지난 번 개정내용과 이번 개정내용이 반드시 동률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산정의 factor인 가격이(국내외 공히) 그때마다의 시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2002년도 원유관세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개정내용

稅番	품명	관세율	
		2001년도까지	2002년도부터
2709.00	원유		
	석유화학제품제조용	63엔/kl	50엔/kl
	기타	215엔/kl	170엔/kl
2710.11-1(1) [2710.00-1(-1)]	휘발유		
	항공기용		
	비중 0.8017 이하	2,090엔/kl	2,069엔/kl
	비중 0.8017 초과	2,360엔/kl	2,336엔/kl

	석유화학제품제조용 발전연료용 기타	12엔/kℓ 750엔/kℓ 1,400엔/kℓ	9엔/kℓ 경감세를 폐지 1,386엔/kℓ
2710.11-1-(2) 2710.19-1-(1) [2710.00-1-(2)]	등유	570엔/kℓ	564엔/kℓ
2710.11-1-(3) 2710.19-1-(2) [2710.00-1-(3)]	경유	1,270엔/kℓ	1,257엔/kℓ
2710.19-1-(3)-A [2710.00-1-(4)-A]	B-A 유 제조용 농림어업용 기타 황함유량 0.3% 이하 황함유량 0.3% 초과	215엔/kℓ 무세 2,620엔/kℓ 3,410엔/kℓ	170엔/kℓ 무세 2,593엔/kℓ 3,306엔/kℓ
2710.19-1-(3)-B [2710.00-1-(4)-B]	B-B, B-C유 제조용 기타 황함량 0.3% 이하 황함량 0.3% 초과	215엔/kℓ 2,400엔/kℓ 3,410엔/kℓ	170엔/kℓ 2,276엔/kℓ 3,202엔/kℓ

(주) 稅番이란 關稅暫定措置法別表第一의 번호를 말하고, []안은 2001년도까지의 세번, [] 바깥은 2002년도 이후의 번호이다.

(자료) 일본 財務省 「關稅定率法一部を改正する法律」(關稅暫定措置法の一部改正)

4. 맺는말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에 관해, 석유업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철폐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다른 곳에서 대체 재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일단 설정된 과세를 해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더구나 재원의 용도가 석탄산업대책, 즉 경제성장에 따라 석탄산업을 위한 구제지원으로 설정된 것이니 만큼, 세제개정시기에는 이 취급을 둘러싸고 다방면의 논의가 나온 것도 사실로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원유관세 수입(收入)에 의한 지원책이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다.

과거에 일본의 산업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국내 석탄산업도 시대의 변천과 같이 그 역할을 마치고 여러 가지 석탄대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종료된다. 그리고, 2006년 4월 1일부터는 원유관세가 폐지되어 겨우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원유관세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전제이다. 🍷